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2008. 1.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08-03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2008. 1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구책임자 :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집필책임자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정보호 및 청소년범죄연구센터장)

공동연구자 : 김유경 조애저 김성희 이건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영실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곽배희 박소현 채규만 현혜순 신연희 정춘숙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 성 가 족 부

본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머 리 말

21세기이후, 각국의 성폭력 범죄대응 패러다임은 사후통제 및 위기대처 중심으로 부터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정책으로, 국가 사법기관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의 다 기관 협력체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성폭력 범죄 사건들이 빈발하면서, 새삼 성폭력 범죄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2005년부터 성폭력범죄에 대한 보다 강화된 대응정책들이 다각도로 진척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고, 소위 “전자팔찌”제도가 도입되는 등 입법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성폭력 대응체계는 여전히 사후처리 또는 위기개입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과 재범억제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전문적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는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법률적, 정책적 발전을 통해 여성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기는 하였으나, 사회현실을 바꾸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전략개발 및 정책생산은 미흡하였다. 2002년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후, 정책 환경변화 및 사회적 요구에 따른 새로운 정책개발 및 법정부적 차원에서의 성폭력 방지 종합계획 마련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조사연구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 연구는 국가 성폭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정책 패러다임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밝히기 위한 전략적 기초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유형별 발생실태 및 숨은 범죄율, 성폭력 피해현황 및 보호지원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예방정책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조사연구는 당 연구원의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인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의 총괄 책임 하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관계자들이 함께 수행하였다. 원내·외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 집필을 위한 연구진의 구체적인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사기획 및 총괄 (김승권·조애저·김유경)

제1장 서론 (김은경)

제2장 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김은경)

제3장 성폭력에 대한 국내·외 정책동향(김은경·전영실·현혜순)

제4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범죄현황(김은경·강은영)

제5장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강은영)

제6장 성폭력 피해조사(채규만·현혜순)

제7장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실태조사(전영실)

제8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김은경)

본 조사연구의 수행에 참여한 전문조사원, 피해자 조사와 지원시설 조사에 참여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관계자 및 상담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또한 표본추출 및 자료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한 손창균 부연구위원, 도세록 연구위원, 최성용 연구원과 연구의 원내 검토자인 당원의 정경희 연구위원과 박세경 부연구위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본 조사연구가 폭력의 예방과 근절, 피해자의 효율적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가해자 처우 및 재범억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여성폭력 관련 복지기관의 시설환경, 운영 및 인력 관리, 서비스 및 인권보호, 지역사회연계 등 주요 영역에서 한층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이 분야의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2008년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용문

목 차

요약	21
제1장 서론	7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6
제3절 연구수행체계	80
제2장 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82
제1절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82
제2절 성폭력을 설명하는 제 이론들	90
제3절 성폭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00
제3장 성폭력에 대한 국내·외 정책현황	121
제1절 국내 성폭력 방지정책 추진현황	121
제2절 주요 외국의 정책동향	138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73
제4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범죄 현황	176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및 처리현황	176
제2절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191
제3절 소결	211
제5장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216
제1절 조사개요	216
제2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6

제3절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실태	244
제4절	성폭력피해 후유증과 사후조치	276
제5절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두려움	285
제6절	한국인의 성의식과 성폭력	295
제6장	성폭력 피해자조사	305
제1절	조사개요	305
제2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10
제3절	현재의 성폭력 피해문제	313
제4절	현재 성폭력에 대한 피해대응과 영향	333
제5절	과거의 성폭력 피해문제	351
제6절	지원제도 관련 사항	362
제7절	서비스 이용 시설의 만족도	371
제8절	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분석결과	389
제7장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실태조사	400
제1절	조사개요	400
제2절	성폭력상담소	403
제3절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435
제4절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461
제8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477
제1절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477
제2절	정책 제언	504
참고문헌	527
부 록	545

표 목 차

〈표 1- 1〉	성폭력 실태과약을 위한 표본 실태조사의 조사내용	77
〈표 1- 2〉	성폭력 피해자조사의 조사내용	77
〈표 1- 3〉	조사대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78
〈표 1- 4〉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조사의 조사내용	78
〈표 4- 1〉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177
〈표 4- 2〉	성폭력범죄의 지역별 발생현황(시도별)	179
〈표 4- 3〉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시간 현황(1997-2006)	181
〈표 4- 4〉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장소 현황(1997-2006)	182
〈표 4- 5〉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구속율(1997-2006)	184
〈표 4- 6〉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전체범죄의 기소율(1997-2006)	185
〈표 4- 7〉	성폭력범죄의 불기소 세부사항(1997-2006)	187
〈표 4- 8〉	성폭력범죄의 1심 선고내용(1996-2005)	189
〈표 4- 9〉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율(1996-2005)	191
〈표 4-10〉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연령(1997-2006)	193
〈표 4-11〉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성별(1997-2006)	194
〈표 4-12〉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교육수준(1997-2006)	196
〈표 4-13〉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직업(1997-2006)	199
〈표 4-14〉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혼인관계(1997-2006)	200
〈표 4-15〉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생활수준(1997-2006)	201
〈표 4-16〉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전회처분상황(1997-2006)	203
〈표 4-17〉	성폭력범죄의 재범가해자 재범기간 및 종류(1997-2006)	205
〈표 4-18〉	성폭력범죄의 공범수(1997-2006)	206
〈표 4-19〉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연령(1997-2006)	208

〈표 4-20〉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별(1997-2006)	209
〈표 4-21〉	성폭력범죄의 가해자-피해자 관계(1997-2006)	210
〈표 5- 1〉	설문문항의 구성내용	217
〈표 5- 2〉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가구주연령별 동부/읍면부별 가구수	225
〈표 5- 3〉	지역별 조,사구 분포주	226
〈표 5- 4〉	지역별 가구분포(90%자료)	227
〈표 5- 5〉	지역별 표본조사구수	228
〈표 5- 6〉	모집단과 표본의 연령별 분포	237
〈표 5- 7〉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 분포	237
〈표 5- 8〉	모집단과 표본의 지역별 분포	238
〈표 5- 9〉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239
〈표 5-10〉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40
〈표 5-11〉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242
〈표 5-12〉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	243
〈표 5-13〉	조사대상자의 장애특성	244
〈표 5-14〉	전체인구의 성폭력 피해율	247
〈표 5-15〉	여성의 성폭력 피해율	248
〈표 5-16〉	강간/강간미수/심한추행/가벼운추행 피해율	249
〈표 5-17〉	공식통계 성폭력범죄 발생율과의 비교	251
〈표 5-18〉	미국과 한국의 여성 성폭력 피해율 비교	253
〈표 5-19〉	강간·강간미수 피해율	254
〈표 5-20〉	심한추행 피해율	255
〈표 5-21〉	가벼운 추행 피해율	256
〈표 5-22〉	성희롱 피해율	257
〈표 5-23〉	연령별 성기노출 피해율	258
〈표 5-24〉	연령별 음란전화 피해율	258
〈표 5-25〉	연령별 스토킹 피해율	259

〈표 5-26〉	부부강간·강간미수 피해율	260
〈표 5-27〉	장애인 성폭력 피해실태	261
〈표 5-28〉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실태	262
〈표 5-29〉	남성의 성폭력 유형별 가해실태	263
〈표 5-30〉	남성의 연령별 성폭력 가해실태	265
〈표 5-31〉	성폭력 충동	266
〈표 5-32〉	남성의 성폭력 충동	266
〈표 5-33〉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폭력충동	267
〈표 5-34〉	범행수단	268
〈표 5-35〉	피해자 대응	269
〈표 5-36〉	대응하지 못한 이유	270
〈표 5-37〉	가해자 특성	273
〈표 5-38〉	피해자 특성	275
〈표 5-39〉	신체적 피해 후유증	276
〈표 5-40〉	정신적 피해 후유증	277
〈표 5-41〉	가벼운 성폭력 피해 후유증 유무	277
〈표 5-42〉	가벼운 성폭력 피해 후유증 유무	278
〈표 5-43〉	가벼운 성폭력 피해후유증의 내용	279
〈표 5-44〉	성폭력유형별 신고율	280
〈표 5-45〉	신고하지 않은 이유	281
〈표 5-46〉	경찰의 조치와 만족도	282
〈표 5-47〉	고소취하 여부	282
〈표 5-48〉	성폭력유형별 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률	283
〈표 5-49〉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지원시설에서 받은 지원내용	283
〈표 5-50〉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지원시설의 도움 정도	284
〈표 5-51〉	성폭력유형별 의료기관 이용률	284
〈표 5-52〉	의료기관 이용실태	285

〈표 5-53〉 전체인구의 성폭력 및 그 외 범죄피해의 두려움	286
〈표 5-54〉 여성의 성폭력 및 그 외 범죄피해의 두려움	286
〈표 5-55〉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폭력피해 두려움	288
〈표 5-56〉 여성의 지역 및 주거 특성과 성폭력피해 두려움	288
〈표 5-57〉 여성의 성폭력 피해경험과 성폭력피해 두려움	289
〈표 5-58〉 응답자 특성별 친고죄폐지에 대한 태도	291
〈표 5-59〉 응답자 특성별 성희롱 처벌에 대한 태도	293
〈표 5-60〉 응답자 특성별 부부강간처벌에 대한 태도	295
〈표 5-61〉 성폭력 인지도	297
〈표 5-6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폭력 인지도	298
〈표 5-63〉 성폭력 허용도	300
〈표 5-64〉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폭력 허용도	301
〈표 5-65〉 이중적 성의식	302
〈표 5-66〉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이중적 성의식	303
〈표 5-67〉 성역할 고정관념	304
〈표 5-68〉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역할 고정관념	304
〈표 6- 1〉 조사대상자의 구성	308
〈표 6- 2〉 사회인구학적 특성	311
〈표 6- 3〉 성폭력 유형별 피해경험(중복응답)	313
〈표 6- 4〉 성폭력의 유형별 피해경험 내용	314
〈표 6- 5〉 강간·유사성교 피해관련 사항	316
〈표 6- 6〉 강간·유사성교 피해 관련사항	319
〈표 6- 7〉 강제추행 피해 관련사항	322
〈표 6- 8〉 강제추행 피해 관련사항	324
〈표 6- 9〉 성희롱 피해 관련사항	327
〈표 6-10〉 성기노출 피해 관련 사항	330
〈표 6-11〉 성폭력 피해로 가장 힘든 점	332

〈표 6-12〉 저항여부 및 효과	334
〈표 6-13〉 가해자 반응 (복수응답)	336
〈표 6-14〉 피해 후 대응 내용(단위: %, 명)	337
〈표 6-15〉 피해 후 관련 기관 지원 사항 (중복응답)	339
〈표 6-16〉 합의해 주지 않은 이유	341
〈표 6-17〉 신체적, 정신적, 사회생활에서의 피해 (중복응답)	344
〈표 6-18〉 신체적 피해내용	346
〈표 6-19〉 심리적 피해내용	346
〈표 6-20〉 심리상태 수준	347
〈표 6-21〉 우울감 수준비교	349
〈표 6-22〉 성폭력 저항에 따른 심리적 피해정도 비교	350
〈표 6-23〉 피해유형에 따른 심리적 피해정도 비교	350
〈표 6-24〉 과거 피해의 유형별 피해경험률(중복응답)	351
〈표 6-25〉 강간·유사성교 피해경험률과 내용	353
〈표 6-26〉 강제추행 피해경험률과 내용	354
〈표 6-27〉 성희롱 피해경험률과 내용	355
〈표 6-28〉 성기노출 피해경험률과 내용	356
〈표 6-29〉 과거의 강간, 유사성교, 강제추행 피해의 세부 내용(중복응답)	357
〈표 6-30〉 과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내용	360
〈표 6-31〉 과거 성폭력 피해 영향 내용	362
〈표 6-32〉 정부서비스 이용 경험과 필요성에 대한 욕구	363
〈표 6-33〉 정부 지원제도 우선순위별 서비스 욕구	365
〈표 6-34〉 저가 임대주택 입주 의사	366
〈표 6-35〉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욕구	367
〈표 6-36〉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위한 기타 사항	368
〈표 6-37〉 성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우선순위별 욕구	369
〈표 6-38〉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욕구	370

〈표 6-39〉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우선순위별 욕구	371
〈표 6-40〉	성폭력 관련 상담소 이용횟수 및 만족도	372
〈표 6-41〉	상담소를 찾게 된 경위	373
〈표 6-42〉	상담소에서 도움 받은 정도	374
〈표 6-43〉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 서비스 만족도	375
〈표 6-44〉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	376
〈표 6-45〉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의 서비스 필요성	376
〈표 6-46〉	상담소 서비스에 대한 우선 순위	377
〈표 6-47〉	성폭력 상담소의 서비스와 관련된 건의 사항	379
〈표 6-48〉	성폭력 관련 보호시설 이용 만족도	380
〈표 6-49〉	보호시설 이용 경위	381
〈표 6-49〉	보호시설 이용 경위	382
〈표 6-50〉	보호시설 이용 평가	383
〈표 6-51〉	현재 이용 중인 보호시설 서비스 만족도	384
〈표 6-52〉	현재 이용 중인 보호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385
〈표 6-53〉	성폭력 보호시설 서비스 필요성	386
〈표 6-54〉	보호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우선순위	387
〈표 6-5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개선 요구사항	389
〈표 6-56〉	피해 후 어려움	390
〈표 6-57〉	피해 후 증상 호소 내용	391
〈표 6-58〉	센터의 장기적인 이용 소망	395
〈표 6-59〉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397
〈표 7- 1〉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401
〈표 7- 2〉	성폭력상담소 조사표	402
〈표 7- 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실태조사표	402
〈표 7- 4〉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조사	403
〈표 7- 5〉	시설위치	403

〈표 7- 6〉 운영주체	404
〈표 7- 7〉 법인의 유형과 이사회 역할	404
〈표 7- 8〉 시설위치별 운영주체	405
〈표 7- 9〉 건물 소유형태와 면적	406
〈표 7-10〉 시설 위치별 건물소유형태	406
〈표 7-11〉 운영주체별 건물소유형태	407
〈표 7-12〉 시설 위치별 정부지원금 수수 현황	408
〈표 7-13〉 운영주체별 정부지원금 수수 현황	408
〈표 7-14〉 시설 위치별 채무 현황	409
〈표 7-15〉 운영주체별 채무 현황	409
〈표 7-16〉 운영주체별 지원피해자 유형	410
〈표 7-17〉 피해자 일시보호 가능여부	411
〈표 7-18〉 시설 내 개별 공간분리 유무	411
〈표 7-19〉 시설운영상의 어려움	413
〈표 7-20〉 연계가 중요한 기관	414
〈표 7-21〉 연계가 어려운 기관	415
〈표 7-22〉 의료기관 연계현황	416
〈표 7-23〉 시설 위치별 의료기관과 연계현황	416
〈표 7-24〉 경찰 연계현황	417
〈표 7-25〉 시설 위치별 경찰과 연계현황	418
〈표 7-26〉 네트워킹 주체기관	418
〈표 7-27〉 전문상담원 교육관련 현황	419
〈표 7-28〉 소송사건 비율 분포	420
〈표 7-29〉 지역 협의체 구성 및 참여 여부	421
〈표 7-30〉 시설 위치별 협의체 구성여부	421
〈표 7-31〉 설립유형별 협의체 구성여부	421
〈표 7-32〉 시설 위치별 협의체 참여여부	422

〈표 7-33〉	운영주체별 협의체 참여여부	422
〈표 7-34〉	협의체 운영 주관기관	423
〈표 7-35〉	상당소 운영일수 및 운영 시간 현황	424
〈표 7-36〉	필요한 지원의 실행 비율	425
〈표 7-37〉	실시 프로그램 내용	426
〈표 7-38〉	장애인 피해자 대상 서비스	427
〈표 7-39〉	아동 피해자 대상 서비스	427
〈표 7-40〉	외부강사 참여 관련 현황	428
〈표 7-41〉	프로그램 평가 관련 현황	429
〈표 7-42〉	사례관리 관련 현황	430
〈표 7-43〉	피해자 사후관리 관련 현황	430
〈표 7-44〉	종사자의 보수 현황	431
〈표 7-45〉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시간	431
〈표 7-46〉	업무교육 및 훈련 시간 관련 현황	432
〈표 7-47〉	직원 휴가 관련 현황	433
〈표 7-48〉	직원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 관련 현황	434
〈표 7-49〉	응답자 특성	435
〈표 7-5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역별분포	436
〈표 7-51〉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주체 관련 사항	437
〈표 7-52〉	시설의 건물·소유형태	438
〈표 7-53〉	별도 공간 마련 여부	438
〈표 7-54〉	피해자 치료비	439
〈표 7-55〉	시설의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440
〈표 7-56〉	건물 또는 운영 관련 채무 유무	440
〈표 7-57〉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	441
〈표 7-58〉	시설 운영에 대한 거주자·퇴소자들의 의견수렴여부	442
〈표 7-59〉	성폭력 관련 기관간의 협의체	444

〈표 7-60〉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협의체 주관 기관	444
〈표 7-61〉	지역 내 주 연계 기관	445
〈표 7-62〉	연계가 어려운 기관	446
〈표 7-63〉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기관	446
〈표 7-64〉	시설 운영의 어려움	447
〈표 7-65〉	보호시설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448
〈표 7-66〉	피해자 보호시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448
〈표 7-67〉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449
〈표 7-68〉	보호시설의 지난 1년간 평균 지원정도	450
〈표 7-69〉	보호시설의 지난 1년간 평균 상담건수	450
〈표 7-70〉	프로그램 실시여부	451
〈표 7-71〉	외부 전문가 활용여부	452
〈표 7-72〉	외부 전문가 사례비지급방법	452
〈표 7-73〉	지난 1년 동안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453
〈표 7-74〉	지난 1년 동안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 사례관리 실시	454
〈표 7-75〉	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	454
〈표 7-76〉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율 및 수용률	455
〈표 7-77〉	지난 1년간 평균 입소기간	456
〈표 7-78〉	거주자 입소기간에 대한 의견	456
〈표 7-79〉	종사자의 보수 분포	457
〈표 7-80〉	종사자 급여수준에 대한 의견	458
〈표 7-81〉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시간	458
〈표 7-82〉	보수교육관련 사항	459
〈표 7-83〉	교육 및 훈련 시간 관련 현황	460
〈표 7-84〉	응답자 특성	461
〈표 7-85〉	센터의 위치	462
〈표 7-86〉	시설 및 지원 피해자 유형	462

〈표 7-87〉 시설 내 개별 공간분리 현황	463
〈표 7-88〉 피해자 지원 표준매뉴얼 유무	464
〈표 7-89〉 시설운영상의 어려움	465
〈표 7-90〉 연계가 중요한 기관	466
〈표 7-91〉 연계가 어려운 기관	467
〈표 7-92〉 의료기관 연계현황	467
〈표 7-93〉 경찰 연계현황	468
〈표 7-94〉 네트워킹 주체기관	468
〈표 7-95〉 필요한 지원 수행정도	469
〈표 7-96〉 실시 프로그램 내용	470
〈표 7-97〉 프로그램 평가 관련 현황	471
〈표 7-98〉 피해자 사후관리 관련 현황	471
〈표 7-99〉 피해자 방문 경로	472
〈표 7-100〉 지난 1년간(2006.1~2006.12) 지원건수	472
〈표 7-101〉 종사자의 보수 분포	473
〈표 7-102〉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시간	473
〈표 7-103〉 교육 및 훈련 시간 관련 현황	474
〈표 7-104〉 직원 휴가 관련 현황	475
〈표 7-105〉 종사자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476
〈표 7-106〉 응답자 특성	476
〈표 8-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형법과 중복되는 규정	507

그림 목 차

[그림 1- 1] 연구수행도	81
[그림 3- 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원스톱 지원센터’ 등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128
[그림 3- 2] 여성폭력 지원시설 수 변화	128
[그림 3- 3] 여성폭력 상담실적	129
[그림 3- 4] 여성폭력 지원서비스 제공인원	130
[그림 3- 5] 집중보호관찰과 외출제한명령 대상자 수	131
[그림 4- 1]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전체범죄의 발생추이	178
[그림 4- 2] 전체범죄의 범죄발생지역 분포(1997-2006)	179
[그림 4- 3]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지역 분포(1997-2006)	180
[그림 4- 4]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시간(1997-2006 평균)	181
[그림 4- 5]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장소(1997-2006 평균)	183
[그림 4- 6]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구속률(1997-2006)	184
[그림 4- 7]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전체 범죄의 기소율 추이(1997-2006)	186
[그림 4- 8]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불기소 세부사항(1997-2006 평균)	187
[그림 4- 9] 전체범죄의 1심선고 추이(1996-2005)	189
[그림 4-10] 성폭력범죄의 1심 선고 추이(1996-2005)	190
[그림 4-11] 전체 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율 추이(1996-2005)	191
[그림 4-12]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연령(1997-2006 평균)	193
[그림 4-13]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여성가해자 비율(1997-2006)	195
[그림 4-14] 전체범죄의 가해자 교육수준(1997-2006)	197
[그림 4-15]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교육수준(1997-2006)	197
[그림 4-16]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직업(1997-2006 평균)	199
[그림 4-17]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혼인관계(1997-2006 평균)	201

[그림 4-18]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생활수준(1997-2006 평균)	202
[그림 4-19]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재범자비율 추이(1997-2006)	204
[그림 4-20]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동종재범율(1997-2006)	205
[그림 4-21]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단독범 비율(1997-2006)	207
[그림 4-22]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연령분포(1997-2006 평균)	208
[그림 4-23]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여성피해자 비율(1997-2006)	209
[그림 4-24]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비면식범 비율 추이(1997-2006)	211
[그림 5- 1] 성폭력 친고죄 폐지에 대한 태도	290
[그림 5- 2] 성희롱 처벌에 대한 태도	292
[그림 5- 3] 부부강간 처벌에 대한 태도	294
[그림 6- 1] 저항한 결과의 효과	335
[그림 6-] 가해자 반응	336
[그림 6- 3] 지원제도 우선순위별 서비스	364
[그림 6- 4] 저가 임대주택 입주 의사	366
[그림 6- 5] 피해 후 증상	390
[그림 8- 1] 치료감호소 개청 후, 정신감정 실적 추이	523

요 약

제1장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1세기 이후, 범죄통제 패러다임에 있어서 사후대처 중심으로부터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보호로의 전환이 강조되면서, 여성폭력방지 특히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의 종합적 정책수립(기본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대두
- 본 연구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중장기 국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우리나라에서의 성폭력 발생 실태, 성폭력 피해현황 및 보호지원실태와 문제점을 실증적인 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향후 성폭력에 대한 국가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획됨. 본 성폭력 실태조사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폭력의 유형별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 처리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예방대책의 마련과 아울러 피해자 보호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자기보고식 성폭력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성폭력 발생률 및 유형별 발생 실태를 밝히고, 발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들을 파악함.
- 실제 피해자보호지원시설을 경험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지원서비스 욕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방안을 제시함.
- 성폭력 피해자지원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로서, 지원시설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현행 피해자보호지원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검토함

- 성폭력 관련 이론적 쟁점 및 국내외 정책현황을 개관하고, 성폭력 관련 선진국의 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하여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보다 실효적으로 성폭력을 예방 및 억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방안 등을 제시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행정 및 범죄통계 수집분석, 19~59세까지의 성인인구표본을 통한 자기보고식 성폭력범죄피해실태조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성폭력보호지원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제2장 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 성폭력을 둘러싼 법적인 범죄개념과 법적 분류, 연령별 유형론, 피해자-가해자 관계별 유형론에 대한 개념정립

□ 성폭력을 설명하는 제 이론들

- 성폭력에 대한 주요 사회학적 이론들에 대한 재검토로부터 출발함. 여기에서는 강간에 대한 네 가지 사회학적 관점들, (1) 성별불평등론(gender inequality theory) 또는 가부장제론 (2) 포르노그래피론(pornography effect theory) (3) 문화적 누출효과이론(cultural spillover theory) (4) 남성성이론(masculinity theory)을 중점적으로 다룸. 이 네 가지 이론들은 각각 사회구조적 및 문화적 측면에서 성폭력 발생에 대해 개별적인 설명력을 제시함.

□ 성폭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성폭력 가해요소들과 관련한 쟁점들, 전통적인 성역할, 강간신화, 애착, 알콜, 아동학대 피해경험, 폭력가해경험, 사이코패시, 일탈적 성적관심과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함.
- 성폭력 피해 및 영향으로서 “강간의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연관된 주요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검토함.

제3장 성폭력에 대한 국내·외 정책현황

□ 국내 성폭력 방지정책 추진현황

- 최근 성폭력 가해자 처벌위주의 사후적 대책으로부터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로 정책기조가 전환됨. 성폭력을 5대 폭력 포함 관련부처가 협력, 범정부적인 차원의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체계를 확립할 것은 사회상황에 적절히 부응한 의제설정으로 평가됨.
- 전반적으로 법률적, 정책적 발전을 통해 여성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기는 하였으나, 사회현실을 바꾸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전략개발 및 정책생산은 미흡하였다. 성매매 방지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대응정책개발은 지체된 경향이 있음. 2002년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후, 정책 환경변화 및 사회적 요구에 따른 새로운 정책개발 및 패러다임 전환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관련정책은 지난 15년 이상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중장기계획은 시도는 있었으나, 결실은 맺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성폭력관련 정책의 새로운 전환적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주요 외국의 정책동향 및 시사점

- 지역사회중심 교육과 예방(Education and Prevention) 정책의 중요성 : 선진 각국의 성폭력정책에는 예방스펙트럼을 통한 규범 및 문화 바꾸기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함. 특히 통합적인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안전증대와 연결하여 발전되고 있음. 지역사회내의 위기수준별(1차-2차-3차 수준별) 및 필요대상들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됨.
- 의료기관 중심의 다기관 협력체계와 성폭력검사관 제도 : 최근 각국의 성폭력 대응모델은 성폭력에 연관된 다기관 협력체계를 통한 가장 통합적인 수준의 관리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하여 강간위기지원서비스(Rape Crisis Support Service)와 SAE(성폭력 검사 프로그램)을 조합시킨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음. 이 모델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치료 프로그램은 반드시 생존자들을 치료를 제공하면서 더 이상의 정신적 또는 의학적 상처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치료를 위한 최고의 실천모델의 실행은 보건관리 제도의 모든 단계에 책임을 다하는 것임.
- 형사사법과의 연계(Linkage with Criminal Justice) : 성공적인 성폭력 예방정책은 지역사회 해결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내실화됨과 동시에 지역사회내 사법집행기관 및 형사사법 시스템과의 연결망 속에서만 실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예시함. 가령, 외국에서는 의료기관 중심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에 있어서 성폭력 검사관 프로그램은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고발했을 때 보다 나은 증거수집과 발전된 형사사법 성과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돌봄과 형사사법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노력과 결합되어 발전되고 있음.

제4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 범죄현황

□ 성폭력 범죄 증가추세

- 성폭력특별법이 시행('94.4.)되고 성폭력이 5대 폭력에 포함('06.5.)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증가추세 : 사법기관에 공식 보고된 성폭력 발생건수는 지난 10년 사이 인구10명당 15.1건에서 27.7건으로 83.4% 증가함. 성폭력범죄의 증가율은 전체범죄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강력범죄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사법기관에 공식 보고된 성폭력사건의 주된 피해자연령은 20대(33.3%), 16~20세(20.0%), 30대(17.9%)의 순으로서 전체범죄(30대, 40대, 20대의 순)에 비해 상당히 낮음. 성폭력범죄사건 중에서 피해자가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도 약 8%나 됨.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10대 및 40대 피해자비율은 감소하는 대신 20대 피해자는 증가추세 나타냄.

□ 성폭력 범죄자 특성 변화

- 지난 10년간 검거된 성폭력범죄자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고(각각 26.8%, 27.4%), 40대(17.3%), 10대(12.5%)의 순으로 나타남. 10년간 추이 변화를 보면, '10대'와 '20대'는 감소하고, '30대'는 보합, '40대 이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성폭력범죄자는 전체범죄 가해자에 비해 연령이 훨씬 낮음.
- 그러나 특히, 최근 중·고등학생 간 집단 성폭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음. 10대청소년 성범죄자(강간범) 발생인원은 2002년도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추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래 꾸준히 증가, 2005~6년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어, 학생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관심과 대응 필요성
- 공식 보고된 성폭력범죄는 상대적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사건 비율이 높음. 성폭력범죄의 비면식범 비율은 지난 10년간 별다른 변화 없이

50%대로 나타남. 이는 성폭력피해자상담소 등 서비스전달체계에서 파악된 피해자-가해자관계유형과는 상당히 대조적임. 여성가족부에 집계된 가해자현황을 보면, 다수의 성폭력이 안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 심리적 친밀도가 높고 물리적 근접성이 높은 친족관계나 애인 및 선후배 간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임.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

- 지난 10년간 성폭력범죄 구속율은 32-59%로서 전체범죄 2-5%, 강력범죄 4-18%에 비해 상당히 높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향을 보임. 하지만, 구속율은 지난 10년동안 세 범죄유형 모두에서 상당 수준 낮아짐. 특히 성폭력범죄는 1997년 47.5%에서 2007년에는 28.8%로 낮아짐.
- 기소율의 지난 10년간 추이를 보면, 강력범죄 기소율이 61.1%에서 38.2%로 크게 낮아진 반면, 성폭력범죄의 기소율은 50.5%에서 43.7%로 소폭 감소.
- 성폭력범죄자들은 1심에서 약 2/5 정도가 집행유예를 받고, 약 1/3가량이 유기징역 선고를 받음. 지난 10년간 나타난 전체범죄의 1심선고상의 변화특성은 ‘집행유예’의 대폭감소와 ‘재산형’의 대폭증가로 요약되지만, 성폭력범죄의 경우 2003년까지는 ‘집행유예’가 오히려 증가하고, 반면 ‘유기징역’은 소폭 감소하는 현상
-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율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0%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2000년에 60%로 증가하였으나, 2001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 40%대를 보임. 10년 동안 성폭력범죄 집행유예율은 약 10%, 전체범죄는 약 20% 감소함 (※ 집행유예율이란 무죄나 재산형을 제외하고 유기징역 선고인원 對 집행유예인원의 비율).

제5장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제1절 조사개요

- 본 연구는 전국 가구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파악함. 이를 위하여 성폭력 행위의 유형을 ‘강간·강간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스토킹’, ‘부부강간’의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13,608명을 대상으로 각 개인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조사하였음. 또한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의 사후조치 실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와 성폭력관련법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성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성의식과 태도를 조사하였음.
- 조사는 가구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국 200개 조사구의 10,000가구를 대상으로함. 조사결과 9,847가구가 조사완료되어 가구조사완료율은 98%이며,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는 13,608명임. 조사는 2007년 8월6일부터 10월29일까지 80일간 이루어졌음.

제2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표본의 대표성 분석
 - 분석에 앞서 수집된 표본의 성별, 연령, 지역 분포에 대한 대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음.
-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 분석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표본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음. 조사대상자들은 남성이 42.0%, 여성이 58.0%이며, 연령은 30대 29.3%, 40대

27.0%, 50~64세 26.6% 19~29세 17.1%임. 73.1%가 유배우자이고, 미혼이 18.9%이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가 80%에 이르는 반면 ‘중학교 중퇴·졸업자 이하’는 약19%에 불과함. 직업면에서는 무직이 35.6%이고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을 합하면 약30%에 이룸. 평균 수입은 285만원이고, 중앙값은 231만원으로 나타났다. 약3.4%인 469명이 장애인으로 집계됨.

제3절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실태

□ 성폭력 피해실태

- 지난 1년간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남녀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인여성 1,000명당 2.2명이 6.1건의 강간·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9.7명이 42.7건의 부부강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성인남녀 1,000명당 심한 추행 피해는 2.9명, 8.9건, 가벼운 추행 피해는 15.0명, 34.7건, 성희롱 피해는 6.9명, 21.3건, 성기노출 피해는 10.7명, 21.2건, 음란전화 피해는 28.3명, 88.7건, 스토킹 피해는 5.4명, 25.5건으로 나타남.
- 여성만을 대상으로 피해율을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19~64세 성인여성 1,000명당 강간·강간미수 피해는 2.2명, 6.1건, 심한추행 피해는 4.7명, 15.1건, 가벼운 추행 피해는 24.6명, 52.5건, 성희롱 피해는 11.2명, 34.9건, 성기노출 피해는 19.2명, 36.5건, 음란전화 피해는 32.0명, 83.7건, 스토킹 피해는 8.4명, 44.9건, 부부강간 피해는 9.7명, 42.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 성폭력관련법으로 규율되는 강간·강간미수·와 ‘강제추행(심한 추행과 가벼운 추행)’의 3가지 성폭력 유형 중 한 가지라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성인 남녀 1,000명당 17.9명이며, 피해건수는 46.7건임. 여성의 경우 강간 및 강제추행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한 사람은 성인여성 1,000명당 29.1명, 피해건수는 73.7건임.
- 범죄공식통계상 2006년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13,573건이며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는 27.7건임. 반면 본 조사결과 추정피해건수는 1,502,237건이며 인구

10만명당 추정피해율은 4665.9건임. 따라서 본 피해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공식 통계보다 강간·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의 발생률은 피해건수면에서 110.7배, 10만 명당 피해율 면에서는 168.4배나 많음. 법적 처벌은 되고 있으나 비교에 포함되지 않은 성기노출, 스토킹, 음란전화와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성희롱, 부부강간을 포함한다면 공식통계보다 발생률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됨.

- 장애인 성폭력피해율을 보면 강간·강간미수, 심한 추행, 음란전화, 스토킹, 부부강간·강간미수는 장애인들의 피해율이 높고,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피해율이 높음. 장애인 인구 1,000명당 5.8명이 5.8건의 강간·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하는데 이는 피해사건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사례수 면에서는 약2.6배 많은 수치임. 심한추행 피해율은 전체인구보다 사례수 면에서는 2.7배 많고 피해건수는 유사하며, 음란전화 피해율은 사례수 면에서 1.8배, 사건수 면에서 2.2배, 스토킹 피해율은 사례수 면에서 1.4배, 사건수 면에서 1.1배, 부부강간 피해율은 사례수 면, 사건수 면에서 모두 1.8배 많음.

□ 성폭력 가해실태

- 가장 많이 보고된 가해행위는 ‘폭행’으로 남성 응답자의 5.7%가 지난 1년간 누군가를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성인대상 성매수’ 4.4%, ‘부부강간’ 4.2%, ‘성희롱’ 2.1%이다. ‘음란전화’, ‘스토킹’, ‘강제추행’은 각각 0.3%이며,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강간미수, 강간, 아동성폭력은 0.1%이다. 성기노출은 단 한 명도 가해경험을 보고하지 않았음.
- 남성응답자의 1.3%는 ‘만약 처벌되지 않는다면 나는 성적만족을 위해 상대를 거칠게 다룰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만약 처벌되지 않는다면 나는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요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1.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보다는 미혼 남성이 성폭력 충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 취업유무,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성폭력 행위특성

- 대부분의 성폭력 유형에서 가해자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다수인 비율이 강간·강간미수, 심한 추행, 스토킹과 같은 심각한 성폭력유형보다 높았음.
- 강간·강간미수와 부부강간의 가해자는 모두 남자이고,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은 90% 이상이 남성이 가해자 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희롱(14.4%), 음란전화(43.5%)와 스토킹(24.3%)은 가해자가 여성인 비율도 상당수 존재함.
- 강간·강간미수와 가벼운 추행의 가해자는 30대와 40대, 심한 추행과 스토킹은 20대가 가장 많은 반면 성희롱, 성기노출, 부부강간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40대와 50대가 많음. 다만 음란전화는 가해자 연령을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절반가까이 이르며, 추정되는 경우 가해자연령은 20대 혹은 30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 성폭력 유형에 따라 면식범 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심한 추행(80.0%), 성기노출(95.8%), 음란전화(98.0%)는 비면식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강간·강간미수, 스토킹, 부부강간은 비면식범 비율이 매우 높음. 반면 가벼운 추행과 성희롱의 경우에는 비면식범과 면식범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구체적으로 강간·강간미수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비율은 15.0%에 불과하고, 가장 많은 관계유형은 전배우자 전애인으로 40.6%에 이르고, 업무상 아는 사이가 19.9%, 동네사람이 9.6%, 그 외 아는 사람이 15.0%였음. 가벼운 추행은 비면식범 비율은 65.6%이고, 면식범 중에서는 업무상 아는 사이가 16.8%로 가장 많고, 그 외 친구나 선후배가 5.8% 였음. 성희롱은 비면식범 비율이 50.4%이고, 면식범 중에서는 업무상 아는 사이가 17.1%로 가장 많아 직장내 성희롱이 가장 대표적인 면식범 유형임을 알 수 있음. 스토킹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 비율은 13.8%에 불과하며, 친구나 선후배가 17.5%, 전배우자나 전애인이 10.2%, 업무상 아는 사이가 9.8%이고 많은 수는 그 외 아는 사람이었음(38.4%).

- 강간·강간미수, 부부강간을 제외하면 여성뿐 아니라 남성이 피해자인 비율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음란전화(43.7%), 스토킹(21.8%), 성희롱(20.8%)은 남성 피해자의 비율이 20%가 넘으며, 가벼운 추행도 17.3%로 나타나고 있음.
- 강간·강간미수와 부부강간, 음란전화의 피해자는 30대와 4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스토킹은 상대적으로 피해자 연령이 낮아서 20대의 비율이 높음.
- 부부강간과 음란전화를 제외하면 미혼 피해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강간·강간미수, 심한 추행, 스토킹은 피해자가 미혼인 비율이 70%를 넘고, 가벼운 추행, 성희롱은 60%대이며, 성기노출 50%대임.
- 성기노출과 부부강간을 제외하면 피해자는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심한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취업비율이 가장 높고 (77.3%), 강간·강간미수, 성희롱, 음란전화, 스토킹은 60%대로 나타나고 있음.
- 피해자의 교육수준은 보면 심한추행,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스토킹은 전문대졸 이상자인 경우가 50%대로 가장 많음. 반면 강간·강간미수, 음란전화, 부부강간의 경우에는 고졸자의 비율이 전문대졸자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제4절 성폭력피해 후유증과 사후조치

성폭력 피해 후유증

- 강간, 강간미수, 심한추행 피해자 중 10.5%는 신체적 피해, 40.7%는 정신적 피해, 20.5%는 사회적 피해후유증을 보고하였음.

성폭력 피해 사후조치

- 경찰 신고율은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2.3%로 나머지 97.7%는 숨은 범죄로 남음. 이 중 강간·강간미수 7.1%, 스토킹 신고율 6.8%, 심한 추행 5.3%이

며, 가벼운 추행 4.7%, 성기노출 4.3%, 그리고 음란전화와 부부강간의 신고율은 1.6%, 성희롱은 1.1%에 불과함.

-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지원시설 이용률은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1.6%에 불과하다. 다만 성폭력 유형별로 이용률이 다소 상이한데, 강간·강간미수 피해자의 7.1%, 스토킹 피해자의 5.6%, 성희롱 피해자의 4.5%가 이용하였음. 이용자 중 65.4%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34.5%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
- 성폭력 피해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자 비율은 강간·강간미수 피해자는 14.3%, 심한 추행 피해자는 5.3%, 부부강간 피해자는 1.6%임.

제5절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두려움

□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

-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성인 남녀의 17.0%이며, 성인 여성들의 경우 이보다 높은 28.1%이다. 여성들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크며, 성폭력 피해경험이 없는 여성보다는 있는 여성이, 기혼보다는 미혼이 두려움을 많이 느낌.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광역시나 그 외 지역 거주자보다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태도

- 성폭력 관련법으로는 친고죄 폐지, 성희롱 처벌, 부부강간 처벌에 대해 조사하였음. 조사대상자들은 친고죄 폐지에 대해서는 87.7%가 찬성하였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폐지에 찬성하고 있음. 성희롱 처벌에 대해서는 65.1%가 찬성하였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30대와 40대가 처벌을 지지하고 있음. 부부강간 처벌에 대해서는 38.7%가 찬성

하였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혼보다는 미혼이,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 차별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제6절 한국인의 성의식과 성폭력

□ 성폭력 인지도

- 성폭력 인지도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강간으로 인지하는 정도를 말함.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가해자관계의 친밀도’, ‘피해자의 저항정도’, ‘피해여성의 원인제공요인(性歷, 품행)’의 세 가지 요인에 따라 다섯 가지 성폭력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성폭력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를 측정하였음. 분석결과 성폭력인지도는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친밀도가 낮은 경우 높아지며 특히 저항유무 보다는 피해자의 음주나 밤늦은 귀가, 성력(性歷)과 같은 원인제공요인이 인지도를 낮추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애인 관계 등 가해자-피해자 친밀도가 높을수록 성폭력 인지도가 낮음.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성폭력 인지도가 높음.

□ 성폭력 허용도

- 성폭력 허용도는 눈짓 몸짓으로 하는 성희롱과 언어적 성희롱, 음란전화와 포르노그래피, (접촉성) 가벼운 추행, 스토킹, 성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부부간간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음. 분석결과 허용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눈짓이나 몸짓으로 하는 성희롱이며 그 다음으로는 성인대상 성매수와 집요한 구애행위, 부부간간의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성폭력 허용도가 가장 낮은 유형은 스토킹의 한 유형인 애정거부에 대한 보복행위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음란전화의 순으로 나타남.

제6장 성폭력 피해자조사

제1절 조사개요

□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성폭력특별법이 1994년에 제정된 후 우리사회는 현재까지 꾸준히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위기개입과 피해자에 대한 법적, 의료적 지원을 중심으로 피해자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07년 4월 현재 전국에는 202개소의 성폭력상담소와 17개소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으며 이중 65개소의 상담소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 2006년도 여성가족부에 집계된 상담실적은 57,865건이며 피해자 보호시설에 연중 입소된 성폭력 피해자는 353명임.
- 성폭력 피해는 피해 유형별, 관계별, 연령별 특성이 다양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의 정도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 필요함.
-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확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가의 중장기 정책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본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의 목적임.

□ 조사의 내용

- 본 조사 연구의 내용은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장애유무, 가족관계, 직업, 결혼유무 등의 일반적 특성, 성폭력 피해유형임
- 가해방식, 피해 장소,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 및 피해연령, 피해에 대한 대응,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피해영향, 정부의 피해자 지원제도 실태, 상담소의 피해자지원 실태, 보호시설의 피해자지원 실태,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피해자 실태임

-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지원받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피해실태, 피해대응, 피해영향, 정부의 지원제도, 상담소 및 보호시설 관련 사항 등을 조사.
- 성폭력보호시설에 입소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성폭력 피해상황과 향후계획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 심리적도 평가척도는 자존감척도, 우울척도, 불안척도, 분노수준 척도, 피해후 유증 척도를 사용하였음.
-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3개 곳을 전수 조사하여 이들 중에서 입소자 87명이 본 연구에 참여했고, 상담기관은 전국을 지역적으로 안배하여 85개 상담소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상담기관의 2배수로 표본 선정하여 상담기관의 내담자 192명을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에 동의한 피해자들로 구성.
- 조사대상자는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서울과 광역시, 전체 표본 192명 중 서울이 35명(19.5 %)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24명(12.5%)으로 두 번째임. 광역시로는 부산이 18명(9.4%)이 가장 많고, 인천(7.3%), 대구와 광주(각 각 6.8%)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울산(4명, 2.1%)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도별로 볼 때 많게는 12.5%(경기도)에서 적게는 1.5%(충북)의 표본을 전국적으로 추출하였음.

□ 조사방법

- 설문조사는 2007년 9월 29일부터 2007년 10월 16일까지 성폭력 상담소에 192부를 배포하여 105부를 회수하였고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96부를 배포하여 87부를 회수하여 총 192부가 회수되었음.
- 심층인터뷰는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02명의 피해자들과 인터뷰하였고 2007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고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방식을 사용하였음

제2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97.4%(186명)가 여성이며,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43.4%(82명)가 컴퓨터나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나이는 출생순위별 자녀들을 모두 합하여(75명) 나이를 파악한 것으로, 기혼자 42명 중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1명으로 이는 전체 조사대상자(192명)의 16.1%에 달한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대부분(응답자의 77.7%에 해당하는 16명), 기혼은 응답자의 22.3%인 42명임.

제3절 현재의 성폭력 피해문제

□ 피해유형별 피해율

- 조사대상자의 성폭력 피해유형 중 가장 높은 유형은 강간 또는 유사성교(70.8%), 강제추행(51.6%), 성희롱(26.6%), 성기노출(16.1%), 음란전화(3.6%), 스토킹(3.1%)의 순임. 강간 또는 유사성교와 같은 가장 심한 유형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응답률(70.8%)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유형의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기관이나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성폭력의 유형별 피해경험 내용

- 상담기관 및 컴퓨터를 이용하게 된 피해내용으로 다른 형태의 피해 없이 강간 및 유사성교만 경험한 경우는 77건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40.1%에 해당함. 강제추행만을 이유로 상담소 및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16.7%임.
- 성희롱만을 당한 경우는 5.2%, 음란전화만을 당한 경우는 1.0%, 스토킹 피해만을 이유로 상담소 및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1.6%에 해당함.
- 강간 및 유사성교와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2.5%이고, 강간 및 유사성교와 함께 성희롱의 경험도 있는 경우는 10.4%, 강간 및 유사성교와 성

기노출 경험을 한 경우는 10.9%, 그리고 강간 및 유사성교와 음란전화, 스토킹을 당한 경우는 각각 .5%와 2.1%임.

- 강제추행과 중복적으로 받은 피해경험을 보면 성희롱은 15.6%, 성기노출 13.0%, 음란전화 2.6%, 스토킹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과 중복적으로 받은 피해경험을 보면 성기노출 10.4%, 음란전화 2.1%, 스토킹 2.1%임.

□ 강간·유사성교 피해실태

- 강간 및 유사성교의 유형으로는 성기삽입이 8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피해 발생 시기는 1개월 이내가 11.1%, 3개월 이전이 19.2%, 6개월 이전이 30.2%로 1년 이전이 46.4%로 나타나, 피해자의 53.6%가 1년이 지난 후에야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을 찾는 것으로 보임.
- 가해방식으로는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강간했다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했다가 34.6%이고, 심신을 무력화하는 방법이 27.2%로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피해자를 제압시키는 방식이 61.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피해 유형을 보면, 한 사람에게 한번 당한 경우가 34.6%로 가장 많고,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했다는 응답이 27.9%,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함 18.4%로 나타나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46.3%로 나타났다.
- 사건발생 장소로서 가장 많이 성폭력 피해가 일어나는 곳으로는 피해자의 집으로 36.8%이고, 다음이 가해자의 집으로 14.1%임.
- 사건 당시 가해자의 음주 여부를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응답은 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해자와의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22.1%)과 아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알고 지내는 사람이 77.9%로 나타나 성폭력은 대부분 아는 사람에게 의해 행해진다는 것을 보여줌.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21.3%로 나타남.

- 가해자의 나이는 사건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20대가 가장 많은 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30~40대가 34.3%로 나타남.

□ 강제추행 피해실태

- 강제 추행의 가장 많은 형태는 강제 키스와 강제 애무로 각 각 38.4%와 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성기밀착이 19.2%, 기타가 6.1%인데 기타로 제시된 애무는 성기나 유방 애무, 손가락으로 성기 삽입을 시도했음.
- 강제추행의 발생시점은 조사 당시(2007년 11월1일 기준)로 할 때 최소한 2주 이상인 것으로 보임. 1년에서 3년 전에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26.0%로 가장 많고, 5년~10년 전과 3개월에서 6개월 전이 13.5%에 이르고, 10년 이상이 되었다는 경우도 10.4%에 이룸.
- 강제추행도 강간이나 유사성교와 마찬가지로 42.4%만이 1년 이내에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을 찾는 것으로 보임.
- 가해방식은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추행했다가 27.1%로 가장 높으며, 술에 취해있거나 잠자는 틈을 이용했다가 19.8%로 나타났다.
- 피해유형은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36.8%로 가장 많고, 한 사람에게 한번 당함 31.6%,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함 20.0%, 여러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7.4%, 여러 상대에게 같은 날 당함 3.2%의 순.
- 함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20.2%이고, 없다는 79.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을 당한 장소로는 피해자의 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40.6%에 이르며, 가해자의 집이 11.5%로 강제추행 피해 역시 52.1%가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음.
- 사건 당시 가해자의 상태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응답은 27.7%이고, '맨 정신이었다'가 59.6%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음주가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폭력 행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작용하지만 대개는 가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음.

- 강제추행 가해자의 성별은 남자가 96.8%이고 여자가 3.2%이며 남자 가해자만을 볼 때 가해자 1명인 경우가 84.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가해자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은 24.0%이고, 20대 18.8%, 40대 16.7%의 순으로 강간 및 유사성교에 비하여 연령이 높은 편임.

□ 성희롱 피해 실태

- 성희롱 피해유형은 한 가해자에게 일회성으로 당한 경우가 31.4%로 제일 많았고 같은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당했다는 경우가 27.57%,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한 경우가 23.5%로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51%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한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건 발생 장소 역시 피해자의 집이 27.7%로 가장 많았으나, 술집 등 유흥업소가 10.6%,이며, 직장, 사무실이나 여관 등 숙박업소, 엘리베이터, 골목길, 어두운 곳 등이 8.5%, 가해자의 집이나 학교, 학원이 6.4%로 나타나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에서 성폭력 발생률이 높은 반면, 성희롱은 주로 집이 아닌 장소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46.8%로 나타났음.
- 가해자와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친족 18.8%, 직장동료나 상사 14.6%, 몇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 10.4% 순이었음.
- 사건 당시 가해자의 나이는 30대가 가장 많은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와 50대는 각 각 21.3%, 19.1%, 60대가 6.8%로 나타나 30세 이상의 성인에 의한 성희롱이 72.7%로 나타났음.
- 가해자의 학력에서는 대학학력 이상이 가장 많은 수준으로 응답자의 29.4%가 이에 해당되며,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은 차례대로 고등학력이 16.7%, 중등학력이 10.4%, 초등학력이 6.3%로 각각 나타났음. 그러나 37.5%가 가해자의 학력을 모르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성기노출 피해실태

- 성기노출 피해 유형은 한 가해자에게 일회성으로 당한 경우가 35.5%로 가장 높고, 같은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32.3%,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한 경우가 23.5%로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55.8%로 나타났다.
- 여러 대상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12.9%로 나타나 성폭력은 대체로 지속적인 피해로 이어짐을 알 수 있음.
- 사건 발생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 40.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엘리베이터, 골목길, 어두운 곳 등도 20.0%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가해자와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3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친족이 25.8%, 직장동료나 상사, 몇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친척 외에 잘 알고 지낸 사람이 모두 9.7%, 친구나 선후배는 6.5%, 동네사람이 3.2%로 보고되었음.
- 사건 당시 가해자의 나이는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29.0%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와 50대도 각각 22.6%, 16.1%로 뒤를 이어 나타나고 있다. 14세 이상 19세 이하도 12.9%를 차지하고 있음.

□ 성폭력 피해 영향분석

- 성폭력 피해로 가장 힘든 점에 관해서 개방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한 결과 불안(14%), 가해자에 대한 분노(14%)가 가장 높았고, 대인기피(10%),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10%)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그 밖에 수치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죄책감 등에 증상을 호소했음.

제4절 현재 성폭력에 대한 피해대응과 영향

□ 성폭력 피해 대응에 관한 사항

- 저항여부 및 효과

- 피해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들이 49.7%의 피해자들이 저항했고, 약 50%는 저항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음.
- 저항한 경우, 85.3%가 적극적 저항을 했음. 그 내용으로는 저항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거나 탈출을 시도한 경우가 41.1%, 소리를 지른 경우 23.2%, 힘으로 저항하고 싸운 경우 12.6%로 나타났음.
- 소극적 저항으로 가해자를 설득하려고 시도하기 8.4%, 무조건 빌고 애원하기 8.4%, 기지를 발휘해서 생리를 핑계 대기 2.1%, 가해자를 속여서 도망칠 기회를 탐색하는 경우도 있었음.
- 저항 결과 성폭력과 신체 폭력을 면하지 못한 경우가 52.1%로 제일 많았고, 성폭력은 면했지만 신체 폭력은 심하게 입었다가 10.6%로 62.7%가 신체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음.
- 다행히 성폭력도 피하고 신체 상해도 입지 않은 경우가 9.6%로 나타났음.
- 저항하지 못한 이유로,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을 당할 까봐 등 28.8%. 놀라움과 공포로 몸이 굳어서 21.2%, 남이 알면 창피할 까봐 11.5%,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11.5%, 술이나 잠에 취해 정신이 없어서가 11.5%로 나타났음.

- 저항하였을 때 가해자의 반응

- 성폭력 상황에서 저항했을 때 가해자의 반응은 폭력이나 구타, 강제적으로 강간, 협박, 흉기 사용, 성기삽입 시도와 구강성교 등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와 자신의 욕구를 집요하게 충족하려고 끝까지 시도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소리 지르자 도망하는 경우는 겨우 7.7%였음.

－ 피해 후 대응

- 응답자들의 84.3%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고 15.7% 만 이 침묵했음.
- 피해 사실을 말한 대상자는 가족이 45.4%로 가장 많았고, 상담소가 42.2%, 친구나 애인 21.6%, 시설 종사자 14.1% 순이었음.
- 피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도와준 경우 24.9%, 상담소에 연락해 준 경우 24.9%를 제외하고,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위로해 주고 (27.6%), 대책을 함께 논의하면서 지지를 해주었음(21.1%). 그러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믿어주지 않거나, 또는 무관심한 경우 등(22.2%)도 있었음.

－ 피해 후 관련기관 지원 사항

- 피해 후 성폭력 상담기관에서 심리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 58.8%, 수사나 법적인 지원 35.7%, 의료적 지원 34.6%로 나타났음.
- 상담소 서비스의 질적인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77.6%, ‘다소 도움이 되었다’ 19.2%로 피해자들은 상담소를 통해서 96.8%가 ‘대체로 만족한다’ 수준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경찰에 신고 된 경우가 53.3%로, 신고 되지 않은 경우(46.7%)보다 높았고, 경찰에 신고 된 대부분의 경우(87.7%)는 경찰은 수사나 방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음.
- 응답자들이 알고 있는 가해자 처리 결과는 징역형이 가장 많았는데(31.8%), 많은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음(50%).

－ 합의해 준 이유

- 자가 합의를 해 준 이유는 대체로 상대방에 대한 온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서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받으려는 동기에서 합의를 해 준 경우도 있었음.

－ 합의 해 주지 않는 이유

- 합의를 해주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잘못에 대한 처벌과 사건을 재발을 막겠다는 이유가 제일 컸고, 상대방을 처벌해서 심리적인 보상과 보복하기 위

한 동기와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로 한 경우도 있었음.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기타 이유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가장 큰 이유는 신고 방법을 몰랐다가 가장 많았음.

□ 성폭력 피해 영향에 관한 사항

- 신체적·정신적·사회생활에서의 피해
 -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58.3%,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경우가 87.0%, 사회생활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경우가 78.1%로 나타났음.
 - 신체적인 피해는 구체적으로 성기 부위의 상처가 54.5%로 가장 많았고, 성기의 신체 부위에 상처가 25.0%, 임신 22.3%, 낙태 22.3%로 나타났음.
 - 피해 후 병원 치료는 56.6%만이 받았고 43.3%가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음.
 - 응답자의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면,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이 63.5%, 우울증 46.7%, 불면증 45.5%, 불안증 40.1%,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 35.3%, 순결상실감 28.1%로 성폭력의 문제를 순결의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63.4%, 자살 기도, 자해 도 19.2%로 나타나 성폭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음.
 - 남자를 혐오하거나 믿지 않게 된 경우가 45.3%, 대인 기피증이 생긴 경우 43.3%,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가 중단 혹은 손상 31.3% 등 인간관계에 제약을 가져온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혼자서는 아무데도 못가는 등 행동장애가 22.0%, 직장을 그만 둔 경우가 15.3%, 결혼할 기회가 차단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5.3%로써 피해자의 행동반경을 축소시킴.
- 심리상태 수준
 - 우울수준은 상담소평균(63.78), 보호시설(59.29)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그다지 없었지만,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응답자들의 우울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분노는 응답자들의 평균(29.00)이 보호시설 응답자들의 평균(25.0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높았음.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우울감 수준
 - Beck의 우울증 척도를 통해서 피해자들을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심한 수준의 우울 집단이 43.8%, 중등도 우울집단이 19.3% 이었고 63.1% 정도의 응답자는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어서 약물을 포함한 적극적인 심리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나타났음.
- 피해자의 저항에 따른 심리적 피해정도
 - 성폭력 피해상황에서 저항한 집단과 저항하지 않은 집단 간에 자존감, 우울감, 분노감, 후유증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우울감, 분노감, 후유증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자존감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음.
 - 피해정도에 있어서 실제로 강간 및 유사성교를 당한 집단 1과 강제추행 등을 당한 집단 2 간에 자존감, 우울감, 분노감, 후유증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자존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우울감, 분노감, 후유증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음.

제5절 과거의 성폭력 피해문제

과거 피해의 유형별 피해경험률

- 조사대상자의 과거 성폭력 피해유형 중 가장 높은 유형은 강간 또는 유사성교 43.7%, 강제추행 36.5%, 성희롱 17.2 성기노출 19.3% 순으로 나타났음.

강간·유사성교 피해실태

- 과거의 강간·유사성교 피해경험률과 피해횟수를 보면, 84명이 과거 성폭력 경험을 당했다고 보고해 피해율은 43.7%이며, 피해횟수는 2~5회가 30.9%로 가장 많았고, 1회가 29.7%, 11회 이상이 26.5%였으며, 6~10회가 13.1%였음.
- 피해내용은 한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함이 36.6%로 가장 많았고, 한사람에게

한번 당함이 23.2 %, 한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함이 17.7%였음.

- 당시 가해자 나이는 19세미만이 26.1%, 20대가 22.6%, 30~40대가 25%였고 50대 이상은 14.3% 로 나타나, 미성년자 가해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됨.
- 사건당시 피해자 연령은 10세 미만이 21.4%, 10~15세 미만이 36.9%, 15~20세 미만이 22.6% 나타나 80.9%가 아동 및 청소년기에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미만의 피해가 58.3%로 나타나 그 피해후유증의 심각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며 전문적 심리치료 개입이 시급함을 보여줌.

□ 강제추행 피해실태

- 과거의 강제추행 피해경험률과 피해 횟수를 보면, 피해율은 36.5%이며, 2~5회가 28.6%, 11회 이상이 22.8%, 6~10회가 10.0%였음. 강제추행 역시 강간 및 유사성교와 마찬가지로 61.4%가 2회 이상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성폭력 피해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피해내용은 한사람에게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50%, 한사람에게 한번 당한 경우가 34.3%로, 동일한 사람에게 당한 피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사건당시 가해자 나이는 20대 미만이 20%로 청소년기의 가해자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대가 17.1%, 30~40대가 37.2%, 50대 이상은 15.7%로 나타났다.
- 사건당시 피해자 연령은 10세 미만이 20.6%, 10~15세 미만이 36.8%, 15~20세 미만이 26.8%로 나타나 아동 및 청소년기의 피해가 84.2%로 어린 시절 피해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성희롱 피해실태

- 과거의 성희롱 피해경험률과 피해횟수를 보면, 피해율은 17.27%이며, 피해횟수는 2~5회가 39.4%, 6~10회가 27.3%, 11회 이상이 15.2%로 2회 이상의 피해

가 81.9%에 달하고 있어 그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피해내용은 한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함의 33.3%로 가장 높았고,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23.3%, 여러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20.0%로 나타나 결국, 76.6%가 2회 이상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건 당시 가해자 나이는 30~40대가 42.4%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미만 18.2%, 50대 이상이 15.2%로 나타나 성희롱은 중장년 이상의 가해자가 5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됨.
- 사건 당시 피해자 연령은 20세 미만이 80.6%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기에 성희롱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세 미만 아동 피해도 22.6%로 나타났음.

□ 성기노출 피해

- 과거의 성기노출 피해경험률과 피해횟수를 보면, 피해율은 19.3%이며, 피해횟수는 1회가 41.7%로 가장 많았고, 2~5회가 36.1%, 11회 이상이 33.3%, 6~10회가 5.5%였다. 성기노출의 경우, 다른 피해보다 1회 피해의 피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피해내용은 한사람에게 한번 당한 경우가 32.3%로 가장 높았고, 한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26.5%, 한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한 경우가 8.8%,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35.3%로 다른 유형의 피해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32.3%로 다른 피해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음.
- 사건 당시 가해자 나이는 30대와 40대가 50%로 가장 많았다. 사건당시 피해자 연령은 15~20세 미만이 50.0%, 10~15세 미만이 23.5%, 10세 미만이 14.7%로 나타났음.

□ 과거 성폭력의 유형별 피해경험

- 강간·유사성교, 강제추행 피해의 세부내용을 보면, 성기 삽입이 40.2%로 가장 많았고 강제애무가 30.5%, 강제키스가 27.3%, 성기밀착이 22.7% 이었고, 구강성교 11.7%, 강간미수 9.7%, 성기에 이물질 삽입 8.4%, 항문성교 7.1%로 보고됨.
- 가해자의 유인 방식은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27.7%로 가장 높았고, 때리는 등의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17.8%, 잠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16.8%로 나타났음.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폭력은 피해자를 물리적이든 신체적 심리적으로 무력화 시켜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가장 많이 보고 된 사건 발생 장소는 피해자의 집으로 20.3%이고, 가해자의 집이 15.6%였고, 나머지 사건 발생장소로는 엘리베이터, 골목길, 어두운 곳, 공동주거지나 숙박업소, 직장, 사무실 등으로 나타났음.
- 가해자와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10.9%, 32.3%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로 친족이나 친부, 양부, 가족이나 친척 외에 잘 알고 지낸 사람, 몇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 피해 몇 시간 전 만난 사람이나 친구, 선후배, 애인, 배우자나 직장동료 등이었다. 그러나 무응답은 47.4%로 보고되었음.
- 사건 당시 가해자의 상태는 맨 정신인 경우가 38.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잘 모르겠다 7.8%, 술에 취해 있었다 6.8%로 나타났음. 무응답은 47.4%였음.

□ 과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 과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에 관한 응답결과는 피해 사실을 말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5.4%,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경우가 18.8%, 무응답이 45.8%로 나타났음.
- 피해 사실을 말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피해 사실을 말한 대상으로는 상담사, 사회복지사가 52.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어머니가

47.1%, 친구, 친척, 선배가 39.7%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에게 말한 경우는 13.2%에 불과했음.

- 또한 피해사실을 들은 사람의 반응은 상담소에 연락한 경우가 6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 신고가 49.7%, 병원에 치료받게 한 경우가 30.9%로 나타났음.
-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수치스러워서가 22.2%로 가장 높았고, 혼이 날 것 같아서가 22.2%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음.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16.7%, 가해자가 무서워서 14.8%, 귀하가 잘못된 것 같아서 13.0%,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1.8%였고, 기타는 3.7%로 응답하였음.

과거의 성폭력 피해영향

- 과거 피해자에 영향을 준 것에 관해서 개방질문 식으로 응답 하게 한 결과, 심리적 고통, 즉 불안, 우울, 분노감정이 가장 많았고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포함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 면도 많았고, 아주 심각한 것은 성폭력으로 인해서 자살사고도 있었고, 가족 불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자존감 실추, 수치심, 죄책감, 임신 낙태, 직장의 어려움 등 피해자의 삶의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음. 즉 이 결과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에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반영함.

제6절 지원제도 관련 사항

정부의 지원제도 이용 및 필요성

- 최근 1년간 정부 서비스 이용경험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및 향후 이용의사에 관해서 질문한 결과 약 94%의 응답자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84.8%가 실제로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보였음.
- 약 98%의 응답자가 정부의 의료비 지원 및 의료 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원했

고, 90% 실제로 이용할 의사를 밝혔다. 93%의 응답자가 직업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요구를 표현한 것을 보면 응답자 자신의 신체 건강을 돌보면서 경제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

- 성폭력 관련 상담소 필요성은 98%의 응답자 필요성을 주장하고, 94%의 응답자 역시 이러한 기관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
- 여성 긴급 전화에 대한 필요성(97%) 과 이용의사(76.3%)도 비교적 높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필요성(97%)도 높았고 이용할 의사도(80%) 높았음. 긴급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이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쉼터의 확장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해바라기, 윈스톱 지원 센터에 관한 필요성 역시 높았지만(97.0%), 실제로 이용할 의사는 해바라기 센터(65.3%), 윈스톱 지원센터(74.6%)의 이용의사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음.

□ 향후 정부의 지원제도의 우선순위

- 현존하는 정부 지원제도 우선순위별 서비스 욕구에 관한 질문을 한 결과 1순위는 성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이었고, 보호시설 퇴소자 자활지원이 2순위, 빈곤 가장 생활지원이 3순위, 자립을 위한 대부 서비스가 4순위 이었음.

□ 저가 임대 주택 입주 의사

- 주거지원에 관한 욕구가 두 집단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쉼터 이용자들이 상담기관 이용자들에 비하여 정부에 의한 저가 임대주택이 제공될 경우 이용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제도화 욕구

-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에 대한 욕구 조사에 의하면, 형사 절차상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강화에는 응답자의

100%가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과 성폭력 상담소를 확충하는 면에서도 99.5%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일반, 국민들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성인식 개선,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강화에 대해서도 강한 지지를 보였음.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정부는 향후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 시설의 확대와 동시에 전문적인 서비스 질의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실현해야 함.

□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타 의견

-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밝힌 성폭력 예방에 관한 제안 사항은 가해 가능성이 있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음. 특히 10대 남성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조했는데, 이 연령대는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한다. 즉 중고생들을 상대로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군대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좀 더 성폭력 예방 교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인 아동과 장애인을 상대로도 자신을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함을 강조했음.
-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수사 과정에 피해자를 배려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요구하기도 했음.

□ 성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우선순위별 욕구

- 성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우선순위별 욕구의 순위 별 내용을 보면, 1순위로 경찰의 순찰기능 강화, 일반국민들의 성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2순위로는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으며,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기관의 확충이라고 응답했음.

□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욕구

-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욕구에 관한 조사 내용을 보면,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확대가 94%,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95%로 제일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이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강화 94%, 장애 유형별 전문 상담자 지원체계 강화가 93%로 나타났음.
- 장애인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해야 하고 장애인 강간 조항에서 항거 불능이라는 용어 삭제도 강하게 요구했음. 즉 장애인들의 인권과 이들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국민적 의식차원에서 교육과 이들을 위한 시설, 상담자들의 확보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함.

□ 장애인 성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우선순위별 욕구

- 장애인 성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우선순위별 욕구는 1순위가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는 가중처벌을 요구했고, 2위는 장애인들의 서비스 기관 확대를 들었고, 3위는 장애인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이었음.
- 정부차원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예방과 지원 정책을 중·장기 과제로 실현해야 할 것임.

제7절 서비스 이용 시설의 만족도

□ 성폭력 관련 상담소의 이용 만족도

- 성폭력 관련기관을 이용한 횟수와 만족도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소, 여성 장애인 상담소, 이주상담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91~100% 정도의 만족도를 보고했음.
- 여성 긴급전화 1366(58.4%), 원스톱 지원센터(73%), 해바라기센터(67%)는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상담소를 찾게 된 경위

- 상담소를 이용한 응답자 중 상담소를 알게 된 경위는 친구, 친지 등 아는 사람들의 권유(32.0%), 공공 기관(20.0%), 매스컴(22.1%)순으로 나타났다.
- 성폭력 상담소 이용에는 주변의 친구들의 권유가 큰 영향을 주고 있었음. 또한 상담소를 찾은 이유에서는 심리상담 및 치료(32.8%),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26.0%), 및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을 알기 위함(12.7%) 순이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욕구도 많았음.

□ 상담소에서 도움 받은 정도

- 상담소에서 도움 받은 정도에 관해서 응답자의 95%가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했으며, 상담소에서 도움이 된 서비스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78.5%)과 의료적 법률적 지원(12.9%)이었고, 성폭력 피해자들은 상담소의 역할 중 심리적인 안정과 심리 치료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심리적인 서비스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는 소수의 응답자가 의견을 피력했는데, 상담소의 열악한 환경과 비체계적인 상담절차, 상담원의 전문성 부족을 예를 들었음.
- 상담소의 환경 개선과 상담원들의 전문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

□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의 서비스 만족도

-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97%가 만족하다고 응답했고, 인터넷으로 상담을 한 경우에 상담의 내용에 대해서 응답받는 데 걸리는 시간(79%), 상담소 방문을 위한 교통편(67%)에서는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고 했음.

□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의 서비스 내용에 관한 만족도

- 현재 이용 중인 상담소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들은 심리치료, 집단

상담 및 교육,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 성폭력 대처 교육 분야, 취업 지원 등에 전반적으로 92~99%의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치료비 지원, 의료 기관소개 등은 89.5%의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의 서비스 필요성

- 법률적인 지원(89%),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및 치료 교육(98%), 집단 상담 교육(82%),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90%) 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 치료비 지원(88%), 사회 복지 관련 기관 정보 제공(81%) 분야에서 서비스의 필요성 강조했다지만, 취업 지원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필요성의 욕구(757%)를 보였음. 이는 응답자들이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기 보다는 현 제도 하에서 직업 지원 기대를 낮춘 것으로 해석됨.

□ 상담소 서비스의 우선 순위

- 상담소 서비스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응답자는 1순위는 개별 상담 및 치료, 2순위는 법률관련 상담 및 지원 연계, 3순위는 치료비 지원 및 의료 기관 소개 순위를 보고해, 응답자들은 상담소 기능에 심리치료 분야 강화를 원하고 있었음.
- 상담에 질적인 개선에 관해서는 면접 상담의 강화와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내담자의 정서적인 지지를 겸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요구했고, 사후 관리를 포함한 추후 상담도 원하고 있었음.

□ 성폭력 보호시설의 이용 만족도

- 성폭력 관련 보호기관에 입주하면서 성폭력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한 만족도는 성폭력 상담소는 89%, 여성 긴급전화 81%, 성폭력보호 시설 92%, 청소년 성상담소 88%, 해바라기센터 75%, 원스톱 지원센터 93%, 여성 장애인 관련 상담소 100%로 다양한 만족도를 보였음.
- 여성 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가 다른 센터에

비해서 비교적 낮았는데, 해바라기 센터의 경우 대기자가 많아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여성긴급전화의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친절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때문으로 추정됨.

□ 보호시설을 이용하게 된 경위

- 보호시설을 이용하게 된 경로를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39.1%)과 정부기관(2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해바라기, 윈스톱 지원센터(12.6%)이었고, 친구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9.2%)는 적었음.
- 보호 시설을 찾은 가장 큰 이유는 치료 및 상담을 가장 많이 필요하고 있었고(40.2%), 가해자를 피하기 위한 목적(26.4%)도 있었음.
- 보호 시설에 대한 입주에 소요되는 기간은 3~6개월(17.2%)과 2~5년 이내가 가장 많았고, 1주일 이내(12.6%)와 2주 이내(9.2%)이었음.
- 보호 시설 입주자들은 62.1%가 보호 시설 입주 기간의 연장을 요구했고, 보호 시설 연장 희망 기간을 16~30일(35.3%)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31~45일(26.5%)이었음.
- 보호 시설의 이용자들은 보호 시설에서 평균 1개월 정도라도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로 해석됨. 보호 시설의 확충이 시급함.

□ 보호시설 이용 평가

- 78%의 응답자들이 보호 시설의 이용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보호 시설에서 피해 후유증 치유로 인한 정서적인 안정면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다(64.4%)고 보고 했고 가해자와의 격리(8.0%) 면에서는 비교적 낮게 보고 했음.

□ 현재 이용 중인 보호시설의 서비스 만족도

- 보호시설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의 83%의 만족함을 보고

하였고,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77%, 위생상태의 만족도는 79.4%, 건물의 안정성의 평가에도 응답자의 81%가 만족한다고 하였음. 이는 보호시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음.

- 보호시설에서 거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에서는 70%의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보호시설이 거주자들의 의견을 좀 더 세심하게 반영하면서 이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 직원들이 거주자에게 관심을 가지고(80%), 거주자를 존중하며(82%), 필요한 지원들을 적절하게 연계해 주는 면의 만족도(77%)들이 대체로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면에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현재 이용 중인 보호시설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 거주하면서 보호시설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의 평가에서 응답자들은 법률관련 상담 및 지원 연계는 78%, 개별 상담 및 치료는 88%, 집단상담 및 치료는 93%, 예술문화 프로그램은 87%, 성폭력 대처 훈련은 89%, 치료비 지원 및 의료기관 소개는 86%, 사회복지 관련 기관 정보제공은 87%가 만족스럽다고 보고 했음.
- 성폭력 후유증을 치료하는 개인과 집단상담과 치료 서비스 분야에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시설에 거주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개인 및 집단 심리치료를 향상해야 함을 제시해 줌.
- 시설에서 제공하는 예술문화 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 치료에서 검증된 프로그램들이 아니기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후유증 극복과 자신감 향상에 검증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심리적인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보호시설의 서비스 필요성

- 성폭력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에게 보호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 조사에서 법률지원에 관해서는 91%, 개별 상담 및 치료 분야 90%, 집단 상담 및

치료 교육 92%, 예술 문화 프로그램 91%, 성폭력 대처교육 분야 87%, 치료비 지원 및 의료 기관 소개 93%, 사회 복지 관련 기관 정보 제공 및 소개 88%, 퇴소 후 정착 지원 90%의 응답자들이 서비스 확장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보호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우선순위

- 보호시설의 프로그램을 개선할 경우에 순위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한 결과 입소자들은 다시 한 번 개별 상담과 심리치료를 1 순위로 강조했고, 법률 상담과 지원 연계, 퇴소 후 정착 지원, 집단 상담 교육, 예술 및 문화 체육 프로그램 등을 요구했음.
-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성폭력에 관한 응급조치에서 성폭력 후유증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기에 와있음을 시사함.

□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개선 요구 사항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입소자들을 상대로 개방 질문을 통해서 시설 개선에 관한 요구 사항을 표현하도록 한 결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시설에 거부하면서 바라는 것은 시설 개선 즉 잠자는 조건 개선, 목욕탕 등 시설 개조와 시설의 위치가 유흥가에 인접한 곳에 있어서 불편한 감정이 있다는 것도 표현했음.

제8절 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분석결과

- 심층면접 분석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후 증상, 향후 계획, 정부에 바라는 사항으로 나누어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고 심층 인터뷰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은 감안해서 이들의 감정 및 정서적 상태를 고려해서 인터뷰를 실시하도록 훈련을 받은 조사관들이 직접 실시했고, 다음은 응답자 102명에 관한 인터뷰의 내용과 이에 관련된 분석 결과임.

- 성폭력 피해 증상은 불안에 관련된 정서적인 고통이었음. 즉 불안, 우울, 대인 관계 어려움, 가해자에 대한 분노 및 좌절감, 낮은 자존감, 자신감의 결여, 억압, 순결감 상실, 생활의 변화 등이었음.
- 이러한 증상으로 볼 때 아직도 이들은 성폭력 피해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한 불안을 보이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불안에 대한 대처와 적극적인 심리적인 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함.
- 컴퓨터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 중 성폭력 가해자가 아버지 또는 사촌 오빠인 경우에 친족 가해자에게 강한 분노감을 느끼고 있었고 또한 좌절감도 경험하고 있었음.
-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 후에 더 어려워졌고, 순결을 상실했다는 사고인데, 이번 조사 대상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음.
- 응답자들은 성폭력 피해 결과로 인한 낮은 자존감, 자신감 결여 및 죄책감과 수치심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고통을 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하는 경우도 보고되었음.
-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가출했다고 보고한 응답자도 있었음. 이들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가정에서 지지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출한 것으로 추측되는 데 청소년들일 경우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입소 후의 생활 변화

- 피해자들은 대체로 입소 후에 자신감이 생기고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꼈다고 보고 했고, 어떤 입소자는 적응 문제로 인해서 퇴소하고 싶은 욕구를 밝히기도 했음.

보호시설의 상담 프로그램

- 보호시설에서 입소자들은 예술치료나 운동을 겸한 요가, 비즈공예,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심리적 충격과 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폭력 피해로 인한 상처치유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폭력 상담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지적됨.

□ 향후 계획

- 대체로 보호시설에 있는 피해자들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심리적인 심리치료,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에 적응하고 싶은 욕구를 밝혔고,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고 성폭력도 예방해서 자립하려는 의지를 밝혔음.

□ 센터의 장기적인 이용 소망

- 학업을 할 수 없거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는 취직할 계획이나 직업 교육 또는 경제적인 자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약 36%이었고,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힌 피해자들이 20% 이어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펼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음.

□ 선호하는 직업

- 장애에 계획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선호하는 직업에 관해서 102 명의 응답들이 장애 희망직업에 사회봉사나, 복지사, 또는 선교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들의 성폭력 상황을 자원을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건전한 일이었음.
- 일반직에는 기술교육, 베이커리, 인테리어 디자인, 공무원 등의 직종에 관심을 보였고, 이들 중에는 예술 계통의 직업에도 선호를 보였고, 작가, 예술가/시인, 또는 연예인에 대한 관심을 보였음.

□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

- 입소자들은 의식주, 경제 지원 (13명), 퇴소 후 정착지원 (7명), 어머니와 같이 살도록 주택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음(5명). 장기체류를 원하는 경우(6

명)도 있었다. 또한 이들은 14%가 심리 의료 지원의 확대를 원하고 있었음.

□ 장애인 대상의 심층 면접 결과 분석

- 향후 계획에 관해서는 봉사활동, 학교 적응, 직업 교육, 자립 등 다양했고, 자신들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이나 기대가 좀 결여되는 듯한 소망을 밝힌 것으로 보임.
- 장애인들이 정부에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은 쉼터의 확대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가장 많이 바랐고, 일부는 학습과 직업 교육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음.
- 또한 장애인피해자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쉼터의 확대, 전문상담, 의식주 문제, 지원금, 지속적인 지원체계, 편견 없는 정부 지원 정책, 학습지원 등이었음

제7장 성폭력 피해자지원시설 실태조사

제1절 조사개요

□ 조사대상 및 기간

- 전국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시설의 현황 및 기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음.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조사대상은 성폭력상담소 158개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0개소,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16개소로 총 194개 시설임. 우편으로 회수된 조사대상은 성폭력상담소 104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7개소, 원스톱/해바라기아동센터 14개소 등 총 135개 시설임. 조사기간은 2007년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음.

□ 조사내용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각각은 특성이 다르며, 고유 특성에 맞게 피해자를 지원하므로 통일된 설문지를 통해 지원시설의 현황 및 기능을 파악할 수는 없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설을 크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로 구분하였음. 이렇게 시설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음.
- 설문지의 구성은 시설유형별로 각각 시설에 대한 일반 사항, 운영 및 관리, 지원제도, 이용자 사항(보호시설은 거주자 사항), 종사자 사항, 응답자 특성 등으로 구성하였음. 전체적인 항목은 동일하지만, 항목 내에서의 개별적인 질문들은 시설 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한 질문들이 포함되었음.

제2절 성폭력상담소

□ 일반사항

- 성폭력상담소의 위치를 보면, 중소도시가 5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도시가 33.3%, 농어촌이 13.7%의 순임. 농어촌의 비율이 가장 낮는데, 농어촌 지역의 성폭력상담소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성폭력상담소들이 작년(2006.1~2006.12)에 정부지원금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보면,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가 비슷하지만 후자가 조금 더 많았음. 이를 시설위치별로 보면, 중소도시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았다는 비율이 55.6%로 절반이상이었으며, 대도시와 농어촌은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각 47.1%, 28.6%였음. 특히 농어촌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은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운영 및 관리

- 조사결과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 중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즉 재정부족과 후원금 모금의 부족에 대

해서는 대부분의 상담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음(90%대). 재정적인 측면 다음으로는 과중한 업무의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높음(70%대). 즉 적은 수의 직원들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업무를 하면서 과중한 업무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담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음. 다음으로는 이용자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 부족, 정규직원 부족(60%대), 시설에 대한 홍보부족, 전문인력 부족, 상담시간의 부족(50%대)이었음. 성폭력 상담소의 정규 직원 및 전문인력 부족 등 인력부족의 문제나 시설홍보, 상담시간의 부족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상담소가 절반 이상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줌.

- 성폭력상담소의 기관간 연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면, 먼저 연계가 중요한 기관은 경찰과 병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연계가 어려운 기관으로는 검찰과 법원의 비율이 높았음. 이는 연계가 중요한 기관과 연계가 어려운 기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지원제도

-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상담소들에서 각 프로그램별로 실시하고 있는 정도를 보면, 개별상담의 경우 항상 실시한다는 비율이 90.2%로 가장 많았음. 성교육과 가정폭력, 성폭력 대처방안 교육도 항상 실시한다는 비율이 각각 79.2%, 70.6%로 많은 편임. 인성교육과 가족상담은 가끔 실시하거나 항상 실시한다는 비율이 각각 40%대로 나타났음. 가해자 교육상담은 가끔 실시한다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었으며, 항상 실시한다는 비율이 28.4%였음. 사례관리는 항상 실시한다와 가끔 실시한다가 각각 53.1%, 39.8%였으며, 예술치료와 정신과 치료는 가끔 실시한다는 비율이 40%대이고, 항상 실시한다는 비율은 10~20%대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실시하는 비율이 낮았음.
- 외부강사 참여관련 현황을 보면,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79.8%로 많은 편이었음.

- 성폭력상담소 중에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비율은 77.0%였으며,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연간 사례관리건수는 20이하가 43.6%로 가장 많았음. 사례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상담소의 경우 그 이유를 보면, 담당인력부족이 55.0%, 기관 간 연계미흡이 30.0%였음. 사례관리를 통한 피해자지원을 위해서는 상담소의 인력 충원과 기관 간 원활한 연계가 특히 중요할 것이라 볼 수 있음.

□ 종사자관련 사항

- 성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의 임금분포를 보면, 100만원 이하의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성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을 보면 주당 39.1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주당 6.96시간이었음.
- 성폭력상담소 중에서 직원의 업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시간이 있는 경우는 87.4%인 것으로 나타났음. 직원의 업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 시간이 있는 상담소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및 훈련방식에 대해 보면, 자체 내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과 외부강사나 외부기관에의 위탁교육을 병행한다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었음. 다음으로는 자체 내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이 27.0%, 외부강사나 외부기관에의 위탁교육이 23.6%였음.
- 종사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본 결과, 낮은 급여수준이 73.0%로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시급한 개선사항 역시 급여수준 개선이라는 응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음.

제3절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일반사항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도시가 52.9%, 중소도시가 47.1%였으며, 농어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농어촌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음.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건물형태를 보면, 일반주택과 아파트가 각각 35.3%였

으며, 상가건물이 11.8% 등이었음. 피해자보호시설은 일반 주거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 운영 및 관리

- 조사대상이 된 피해자보호시설의 재정지원 관련사항을 보면, 부족하다는 경우가 58.8%, 매우 부족하다는 경우가 41.2%로 100%의 시설에서 재정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에 보호사업을 감당하기에 인력이 충분한지의 여부를 알아 본 결과, 부족하다(70.6%)와 매우 부족하다(17.6%)를 합한 비율이 90% 가까이 되어서 대부분 시설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시설의 인력이 부족한 경우 충원이 필요한 인원은 1~2명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에서 주로 연계하는 기관을 알아 보면, 전담의료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법률구조공단,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도 여성복지담당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음. 연계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 보면, 대체로 연계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경찰, 법률구조공단, 응급구조단의 경우가 다른 기관에 비해 조금 더 연계가 어렵다고 하였지만, 그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운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을 보면, 재정부족이 64.7%로 가장 많았고,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의 운영미흡이 23.5%, 열악한 시설 공간 및 환경이 11.8%였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문인력 확충이 41.2%, 시설의 공간확보 및 환경개선이 17.6%, 서비스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가 11.8%,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제공, 사후관리 강화, 시설의 적극적 홍보가 각각 5.9% 등이었음.

□ 지원제도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면, 항상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88.2%), 사례관리와 진학교육(각각 70.6%), 진로지도 및 상담(64.7%), 직업훈련, 폭력대처교육, 성교육(각각 58.8%), 양성평등교육(52.9%),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29.4%)의 순이었음.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다는 경우는 88.2%였으며, 10%를 조금 상회하는 시설에서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1년 동안(2006.1~2006.12)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프로그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던 경우가 64.7%였으며, 평가하지 않은 경우는 35.3%였음.
-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지난 1년 동안(2006.1~2006.12) 사례관리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보면, 실시한 경우가 75.0%였으며, 25.0%의 시설에서는 사례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거주자 사항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지난 1년(2006.1~2006.12) 입소율을 보면 평균 76%로 나타났음. 수용률은 시설입소 희망자 대비 수용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조사대상이 된 시설들의 평균 수용률은 약 83%인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1년간(2006.1~2006.12) 거주자들의 평균 입소기간을 알아 보면, 평균 입소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를 합한 비율이 70%를 넘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음. 반면 입소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는 없었는데,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해서는 개별 피해자에 따라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임.

□ 종사자 사항

-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었으며, 현재 종사자 급여수준에 대한 의견에서도 이러한 점이 나타남. 즉, 현재의 급여수준이 부족하다와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을 합한 비율이 94.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을 보면, 주당 66.79시간이었으며, 평균 초과근무시간도 주당 18.80시간이어서 초과근무도 많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에서 직원의 업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과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58.8%는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1.2%는 없었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훈련과정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임. 직원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과정이 있는 시설의 경우 그 방식을 보면,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44.4%, 시설 내 자원활용, 시설 내 교육+외부위탁이 각각 22.2%였음.

제4절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 일반사항

-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위치를 보면, 대도시가 64.3%, 중소도시가 35.7%였으며, 농어촌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 센터가 14개 밖에 되지 않으며, 도시 중심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보임.
- 피해자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상담원 지침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 보면, 그러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절반씩이었음. 원스톱지원 센터나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 동시에 여러 가지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특히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지침 등이 필요할 것이라 볼 수 있음.

□ 운영 및 관리

- 조사대상이 된 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시설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파악해 보면, ‘정규직원 부족’의 경우 100%의 센터에서 어려움이 있다(‘있는 편이다’와 ‘매우 많다’를 합한 비율)고 응답하였음. 또한 ‘휴일근무교대의 어려움’(78.6%), ‘야간근무교대의 어려움’(78.5%), ‘시설공간의 부족’(78.6%), ‘이용자필요에 맞는 프로그램 부족’(71.4%)도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70%대를 보임. ‘전문인력부족’(69.3%), ‘센터에 대한 홍보부족’(61.5%)은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60%대였으며, ‘과중한 업무’는 57.1%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 연계가 중요한 기관은 경찰, 병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과의 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연계가 가장 어려운 기관은 검찰, 법원이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성폭력상담소의 경우와 일치하는 결과임.

□ 지원제도

-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 중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본 결과, 면접상담과 전화상담은 모든 센터에서 항상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신과 상담은 항상 실시한다는 응답이 71.4%였으며, 나머지는 가끔 실시한다고 응답하였음. 가족상담은 가끔 실시한다는 응답이 71.4%였으며, 나머지는 항상 실시한다고 응답하였음. 사례관리는 가끔 실시하거나 항상 실시하는 비율이 84.6%였으며, 성폭력관련 조사연구는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자 사항

-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지난 1년간(2006.1-2006.12) 평균 지원건수를 보면, 서비스 건수는 평균 1245건이었음. 지원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상담 건수가 평균 545.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지원건수가 307.93건, 심리치료

건수가 287.67건, 법률지원건수가 181.31건의 순이었음.

□ 종사자 사항

- 종사자들의 월급을 보면, 대부분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였음.
- 센터 직원들의 평균 근무시간을 보면, 주당 51.00시간이었으며, 평균 초과근무시간을 보면 주당 13시간으로 나타나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조사대상이 된 센터들의 경우 직원의 업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시간이 있는 경우가 78.6%였으며, 그런 시간이 없는 경우는 21.4%였음. 직원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시간이 있는 경우에 교육방식을 보면, 자체내 자원활용+외부위탁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자체내 자원활용과 외부위탁 각각의 방식을 취한다는 응답은 각각 27.3%였음.
- 조사대상이 된 센터에서 종사자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된 것은 ‘낮은 급여수준’이었으며(35.7%), 이 외에 열악한 근무환경, 직원 보수교육이 각각 21.4%를 차지하였음.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인력충원이 57.1%, 급여수준 개선이 28.6% 등으로 나타남.

제8장 정책제언 및 결론

□ 성폭력 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 성폭력 관련정책이 15년 이상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중장기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못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성폭력관련 정책의 새로운 전환적 계기를 마련해야 함. 중장기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다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4가지 기본 축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함. ① 입법정책(입법부) - 성폭력 관련 법제 정비 및 법의 실효성 제고; ② 예방환경정책(교육부·행자부·문화부) - 성폭력 예방교육 및 대국민 의식전환, ③ 피해자보호정책(여가부·법무부·행자부) - 피해자 권리보호 및 실질적 지원대책; ④ 가해자재범억

제(법무부·행자부·청소년위원회) - 성폭력 범죄자 처벌 및 재범방비

□ 성폭력 관련법제의 정비

-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개념규정하고, 저항의 유무보다는 동의의 문제로 접근하는 성폭력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며, 형법으로 성폭력 특별법의 처벌조항 포함과 처벌법과 보호법의 분리입법, 강간죄의 대상과 행위의 확대, 아내강간죄와 비동의간음죄의 신설,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정지 및 연장규정,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공판중심주의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 권리보호 조치 규정 마련 등 법 개정작업이 시급함. 이밖에 양형기준법의 도입 및 취약 계층 성폭력 피해자들을 고려한 입법정책이 요구됨.

□ 성폭력 예방 및 대국민 인식개선

- 사회전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캠페인성 행사나 의례화된 일회성 강의보다는 여러 경로의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이 다차원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무엇보다도, 학교기반에서의 성폭력예방교육이 실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인 교육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행자부 및 복지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교육자료의 개발 및 전문가 양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관련교육을 통합,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성인지적 평화인권 교육체계의 도입이 요구됨. 즉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더불어, 폭력예방교육 전담교사 육성 및 교육시간확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간 폭력예방교육 연계체계 마련 등이 시급함
- 연령별·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및 전문강사진(전문강사은행) 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기반을 통하여 교사대상 직무교육 및 부모대상교육이 강화되도록 하고, 각 대상별 교육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운영계획에 교육시간이

확보되도록 명시하고, 시도 교육청의 성교육 전문 연수과정(60시간 이상)개설 확대, 교육부 학교폭력 추진상황 점검 시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상황 점검 실시 및 학교관리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성폭력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사범담당자·의료담당자에 대한 교육강화
- 보육 및 교육시설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의무화

□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시스템 구축

-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성폭력 피해 의료 지원 협력’이 실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공립 병원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협조할 것을 의무화할 필요.
- 의료인들의 인식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 성폭력 피해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병원 측에서 진료를 거부하고, 내담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는 병원 측에서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협조했을 경우에도 병원 측에서 어떤 이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임.
- 피해자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강화 : 의료지원금을 받는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받지 않는 형식으로 신청서 양식을 변경하고, 향후 필요하다면 이를 암호화하는 등 비밀보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의료비 지급 업무담당자의 효율화 : 현재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업무는 일선 상담소에 일임. 따라서 상담소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의료비 지원 및 홍보, 지급, 지급 이후 지원 내역에 대한 보고를 위한 업무를 상담소의 여타 업무와 함께 진행하는 어려움을 겪음. 여성가족부에서 의료비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원스톱 지원센터처럼 진료현장에서 바로 지원이 가능한 연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유산에 대한 제도 현실화 :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인공유산은 모자복지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권리임.

□ 성폭력 피해자 법률적 지원체계의 개선

- 법률지원 업무 담당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제도 보완
- 성폭력 수사전담제도의 효율적 운영 : 성폭력 피해 수사를 전담한다는 것은 단 지 경·검찰의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 그 이해에 기반한 수사 방식의 전문성임. 따라서 성폭력 수사전담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의지 있는 인력 배치와 교육이 시급함
- 사법보좌인 제도의 도입 : 현재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신뢰 관계있는 자가 수사 재판 과정에서 동석할 것이 권리로 보장되어 있음.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사법보좌인제도를 도입할 필요.

□ 성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여성폭력피해자들은 자립지원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기존의 쉼터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등을 통해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 검찰, 지자체, 직업훈련기관, 의료계 등 지역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형성해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예방을 위한 지역 내 예방 및 홍보, 피해자의 안전계획 수립, 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활성화와 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스템 (취업, 직업훈련, 주거지원) 마련, 피해 아동이나 피해자가 사실상 부양하는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육 지원, 지역 내 연계망의 업무를 위한 지침 수립, 피해자 공동 지원 사례 관리 등의 정책 수립필요.

□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질적 강화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 심리치유 서비스 강화 :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

대로 후유증에 관한 본 연구 결과 63%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응답할 당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음. 이들 피해자들은 약물을 포함한 적극적인 심리치료가 절실히 필요함.

-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체로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고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반복적이라는 것을 감안 하면, 데이트 성폭력, 아는 사람과의 성적인 경계성 설정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이 분야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함.
- 성폭력 상담소의 전문성 강화 : 현재 성폭력 상담소는 2007년 4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02개소가 있다. 성폭력 상담소가 많이 설치되어도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도 않기에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경험함. 따라서 이제는 정부 지원 상담소는 서비스 구역을 설정하거나 할당해서 전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소의 확충보다는 상담소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하여, ① 성폭력 상담사들의 전문화, ② 성폭력 상담사들의 대우 향상, ③ 성폭력 상담원 심화 교육 강화, ④ 성폭력 상담원 자격기준의 마련과 자격관리제도의 도입 등 성폭력 피해자에게 질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제도화 강화가 필요함.
- 원스톱 지원센터 및 보호시설의 확충 : 성폭력 발생 후 즉각적으로 보호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성폭력 피해자들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교통의 불편, 대기자가 많아서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점 등 때문에 불만을 들어냄. 따라서 한 곳에서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센터의 확장이 필요함.
- 장애인 피해자들에 특화된 종합적인 대책 필요 : 성폭력에 취약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주거 문제, 생계 문제, 후속 관리 등 심리적, 사회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함.
- 아동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 지원센터의 확장 :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 만13세 이상 아동(미성년)피해자에게도 지원을 확대될 필요가 있음. 형법의 의제장간의 연령 상향 조정과 함께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또한 전문가에 의한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함이 요구됨. 이와 더불어 아동피해자 지원

을 위한 통합적 국가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 가해자 재범억제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 「유전자 정보은행」 도입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 제고 :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재범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수사방식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급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06. 8. 정부발의안)이 제정됨으로써,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제도의 개선: 날로 흉포화·누범화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 처벌강화와 함께 치료적 처우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국내 성폭력범죄자 전담 수용·치료시설은 전무함. 현행 치료감호제도를 개선하여, 성도착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장애자에게 확대·적용하여 전문적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성폭력 범죄의 경우 처벌 및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 선고율을 높이고, 교정 시설 내 치료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형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현재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06. 12. 22.)하였고, 법률시행 후 2년 내인 2008년까지는 양형기준이 제정될 예정임.
- 성폭력 범죄자의 교정교육체계 마련: 현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혹은 보호관찰의 대상에게는 교정교육 등과 같은 처우가 집행되고 있는 반면, 실행선고를 받은 수감자에게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정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음.
- 성폭력사범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집중보호관찰·사후관리 강화 : 실제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성폭력사범 보호관찰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실효성 있

는 수강명령프로그램의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개발, 본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등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한편, 고위험군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외출제한명령의 확대 및 집중보호관찰 지정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있음. 또한 향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팔찌)의 시범운영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 사후관리 등이 실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실효성 있는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 가해자의 연령, 가해행위의 특성 등 대상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이 요구됨. 특히 최근 성폭력가해자의 저연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성년가해자에 특화된 교정·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